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13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김 윤·김선민·김병기

박정현 • 박홍배 • 이용우

이재정 · 김남근 · 김현정

모경종 • 박해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전송을 위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였음. 이 중 한 업체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여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 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더해 이러한 플 랫폼상의 우선노출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해당 도매상에서 구 매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여 재주문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영 업도 하고 있음.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업자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중개업자등이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여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46조 및 제47조등).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다음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약속하는 행위가. 의료인
 - 나.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종 사자
 - 다. 환자와 약국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약국중개플랫 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람(이하 "약국중개플랫폼사 업자"라 한다)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 2.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제4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
- 제47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플 랫폼사업자(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 함한다)와 약국중개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국
 - ①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임직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다.
 - 1. 환자에게 사은품·의약품 가격 할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 2. 환자에게 약국의 의약품 가격·조제 가능 여부·배달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제95조제1항제8호 중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제7항"을 "제 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제7항·제1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① 약국개설 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 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 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 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 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약 속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 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 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신 설>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① 약국개설
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금 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u>가. 의료인</u>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 저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나.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종사자
- 다. 환자와 약국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약국중개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람(이하 "약국중개플 랫폼사업자"라 한다)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 2.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 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하여금 약국중개플랫폼

 사업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취

 득하게 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세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
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1. ~ 4. (생 략) <u><신 설></u>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 ⑥ (생 략)

⑦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신설>

⑧ ~ ⑩ (생 략)
<<u>신 설></u>

	1.	\sim	4.	(현	행고	牛 >	같음)	
	<u>5.</u>	약	국	중개	플릿	본	사업	사	
제	47	조(의	갹품	등의	4 3	판매	질서) ①
	~	6	(7	현 행	과	같-	음)		
	7								

- 1. 2. (현행과 같음)
- 3.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 국중개플랫폼사업자(약국중개 플랫폼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와 약 국중개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국
- ⑧ ~ ⑩ (현행과 같음)
- ①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약국 중개플랫폼사업자가 법인인 경 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7의3. (생략)
-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 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 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제7항 또 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8의2. ~ 12. (생 략)

②·③ (생 략)

- 1. 환자에게 사은품・의약품 가

 격 할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

 를 유인하는 행위
- 2. 환자에게 약국의 의약품 가 격·조제 가능 여부·배달 가 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 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 인하는 행위

제95조(팀	벌칙)	1	 	

- 1. ~ 7의3. (현행과 같음)
-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 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 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제7항·제 11항-----

8의2.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